

#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단체 약정서

## 제1조(약정목적)

본 약정서는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원금 지원 대상 단체간의 준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참가단체"와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대상인 공연의 티켓 예매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①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이란 공연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운영하는 플러스 티켓 지원 사업을 말한다.
- ② "참가단체"라 함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 ③ “주관 예매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의 티켓 판매처로 선정한 업체를 말한다.
- ④ “1+1티켓(본인부담)”은 공연 관람자가 구매하는 티켓을 말한다.
- ⑤ “1+1티켓(무료지원)”은 1+1티켓(본인부담) 구매 시 추가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가격을 지원하는 티켓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참여 조건)

- ①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본 약정서에 동의해야만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참가단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1+1 티켓 대상 공연 및 판매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 예매처에 1+1 티켓 판매를 위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주관 예매처에서 티켓 판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또한 참가단체는 티켓 판매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주관예매처에서 합의한 정책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지원 내용)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참가단체에 판매된 “1+1티켓(무료지원)” 금액을 지원한다.
- ② 지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만원 이하의 공연티켓에 한함.

2. 5회 이하 공연의 경우 회당 200석에 한함. 6회 이상 공연의 경우 회당 100석을 한도로 함.
3. 한 공연단체에서 최대 3개 공연까지 지원 가능함.
4. 공연당 지원액은 1.5억원을 한도로 함.
5. 동일 공연으로 공연장 변경(투어 공연 등)시 한도액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 한도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제5조(참가단체의 권리 및 의무)

- ① 참가 단체는 공연 시장 활성화와 공연 수요층 확보를 위하여 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티켓 판매 및 정산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참가단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하여 1+1 티켓 판매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여 수령한다.
- ③ 참가단체는 제2항의 지원금 교부 신청시 참여 공연의 1+1 티켓 이용 관람객 및 관람료 등의 현황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참가단체는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의 안내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요청하는 공연 관련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참가단체로부터 참여 공연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티켓 판매의 투명한 진행과 민원 대응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연 좌석 및 가격)

- ①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대상 공연은 지원 확정 시 결정된 좌석수, 공연 회차, 티켓 권종, 1+1 적용 티켓 가격을 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변경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② 1+1티켓(무료지원)으로 배정하는 좌석은 별도 할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8조(티켓판매 주관처에 대한 수수료 및 대행료 지급)

- ① 참가단체는 주관예매처에서 판매된 1+1 티켓 중 1+1티켓(무료지원)을 제외한 1+1티켓(본인부담)에 대하여 참가단체와 주관예매처와의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주관예매처에 판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 ② 참가단체는 1+1티켓(무료지원)에 대하여 주관예매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시스템구축 및 운영대행료(이하 '운영대행료'로 한다)를 주관예매처에 지급한다.
- ③ 주관예매처는 공연 종료 후 판매 대금 정산시, 주관예매처와 참가단체가 체결한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본조 제①항에서 규정한 제반 수수료와 본조 제②항에 따른 1+1티켓(무료지원) 운영대행료를 사전 공제할 수 있으며, 참가단체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참가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제 12조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혹은 1+1티켓(무료지원)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기타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티켓판매 주관처에 선 지급한 운영대행료를 반납받을 수 없다.

**제9조(지원금 지급 절차)**

- ① 참가단체는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대상 공연의 사업기간 종료 후 주관예매처로부터 티켓 판매 결과(공연 종료 후 발행되는 정산서상의 결과)를 통보 받으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1+1 티켓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참가 단체의 교부신청서상의 티켓 판매 정보와 티켓판매 주관처에서 제공한 1+1 티켓 판매 정보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지원금을 확정하고 확정 후 2주 내에 지원금을 교부해야 한다.(본 지원금에는 제8조 2항의 운영대행료가 포함되어 있음)
-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참가단체가 위 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제11조에 따라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주관예매처와 1+1 지원 대상 공연 티켓 판매 계약 단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 ① 공연티켓 1+1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연(이하 선정공연)에 대하여, 주관예매처와 티켓판매 계약을 체결한 단체(본 조에서 이하 B라 한다.)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본 조에서 이하 A라 한다.)와 다른 경우(A가 B와 티켓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B가 주관예매처와 선정공연 티켓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신청 시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경우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 9조의 지원금을 A에게 지급한다.

- ③ 주관예매처는 선정공연에 대하여 B에게 “공연티켓 1+1” 판매 결과에 대해 정산하며, 이 경우 제8조의 참가단체의 해당하는 사항은 B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된다.
- ④ 이 경우 A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붙임 3]의 A와 B가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본 약정서 체결 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1조(지원금의 지급보류 및 지원 취소)**

- ① 참가단체(극단·기획사)가 [붙임 1]의 지원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여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는 선정을 취소하며 정산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한다.
- ② 제12조(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의심이 되는 경우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며,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내용은 공연 종료 후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관련 민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민원 해결 시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제12조(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

- ① 참가단체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붙임 2]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계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본 약정에 따른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단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참가단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하며 1+1티켓 사이트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사이트를 통해 사실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분쟁조정기구)**

- ① 제12조(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분쟁이 있을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인 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최소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분쟁에 대한 조치는 1+1티켓 조정위원의 과반수 의견에 의해 결정한다.
- ④ 위 조정기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적발된(또는 제한된) 1+1티켓 참가단체는 법

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4조(관할법원)**

본 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약정은 그 성립 및 내용을 이상과 같이 합의한다.

[붙임 1]

【지원신청 제외 대상】

- 2015.8.18.~12.31.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아닌 경우
- 국·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는 단체 또는 작품 제작비를 전액 지원받는 작품
- 언론사 및 언론사,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의 단체
-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문예기금 미정산 단체
- 길거리 호객행위등으로 공연예술시장을 교란시킨 공연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위반행위 처리기준 준용)

[붙임 2]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리기준
1. 참가단체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거나 예매한 경우, 또는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이용한 경우(단,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제출 시 제외)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3년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필요시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2. 사재기(매점매석) : 공연 현장 점검 시 1+1티켓(무료지원) 판매량 대비 객석 70% 미달 시 사재기로 간주	
3. 이벤트성 초대관람이나 후원금, 타 지원금 등으로 초대관람이 명백하나 이를 유료 티켓으로 판매한 경우	
4. 신청 시 참가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이 아닌 다른 내용의 작품이 진행될 경우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1년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5. 공연단체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협의 없이 예매자의 공연일자를 변경한 경우	- 지원금 지급 중지 또는 환수
6. 참가단체가 판매 진행 중 가격을 변경(권종 추가는 제외)하거나 공연이 취소된 경우	- 차액환불, 관람료 환불은 참가단체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며 환불이 완료될 때 지원금 지급 - 1회~2회 변경 : 사유서 접수 및 경고 조치 - 3회 이상 변경 시, 6개월간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
7. 참가단체(극단·기획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취소, 조기종료, 부실 공연, 공연 시간변경, 장소 변경, 통보누락 등으로 취소 및 기타 고객 민원이	- 민원 처리시까지 지원금 지급 보류

위반행위 유형	처리기준
발생할 경우	
8.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1+1 티켓을 구입, 판매, 운영하는 경우	- 사안에 따라 처리

참가단체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선정 대상 공연 (공연명) \_\_\_\_\_

참가단체명(단체, 기획사) : \_\_\_\_\_ (단체명)

주소 :

대표자명 : ○○○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위원장 박명진

[붙임 3]

## 확인서

- 지원사업명 :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 선정 공연명 :
  - 공연기간 :
  - 공연장 :
  - 주최(참가단체 A) :
  - 예매주관처 티켓판매 의뢰처(B) :

위 공연의 주최자(공연티켓 1+1지원 대상 단체)와 예매 주관처(인터파크)에 동 공연 티켓 판매를 의뢰한 의뢰처는 본<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지원대상 단체 약정서>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참가단체(A) 대표자 : ○○○ (서명)

주관예매처와 티켓판매 계약을 체결한 단체(B) 대표자 : ○○○ (서명)